

2017 |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세계일류상품 간접지원제도 안내



세계일류상품

목 차

02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03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04



기술보증기금

07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09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12



한국무역보험공사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1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2



한국지식재산전략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Strategy Agency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소요인원 배정) 추천시 일류상품기업 우대

1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소요인원 배정) 추천시 일류상품기업 우대

□ 지원 내용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제도) 신규 선정 및 소요인원 추천시
세계일류상품기업에 점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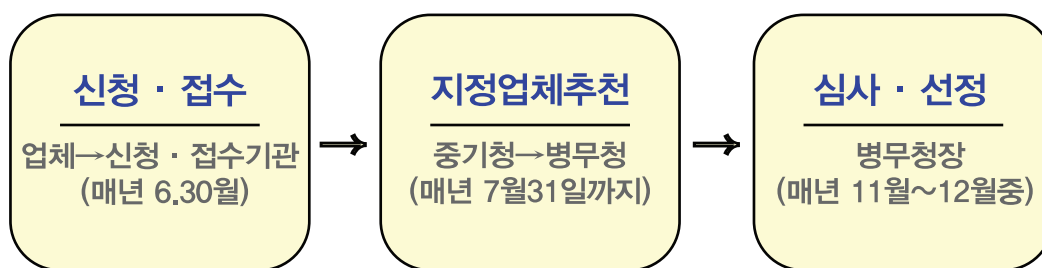
- 추천 점수
 - 추천기준 중 기타부문(정부시책 참여기업)에서 5점 부여

〈참고〉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요】

-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현역 입영 또는 소집대상 보충역)의 일부를 병역지정 기업체에 기술·기능인력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
 - 병역지정 기업체(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우대내용】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중 고용노동부에서 '강소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에 대하여 병역지정 업체 선정 및 소요인원 배정 추천시 점수 부여(5점)

【문의처】

- 중소기업청 : 인력개발과 042-481-4482(www.smba.go.kr)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일류상품기업 우대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일류상품기업 우대

- 지원 내용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 가점부여 내용
 - 평가항목 중 신인도 부문에서 0.2점 가점

※ 물품구매적격심사제도

【개요】

- 입찰집행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점수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우대내용】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에 대하여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에서 가점부여

【제출서류】

- 세계일류상품 자격유지 공문 제출 (KOTRA문의) 혹은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사본 (당해연도 선정기업)

【문의처】

- 조달청 : 구매총괄과 042-481-7464(www.pps.go.kr)

KIBO 기술보증기금

1.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기술혁신 선도형기업으로 지정
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및 우대지원

1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기술혁신선도형기업으로 지정

- 지원내용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기금의 중점지원분야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으로 지정하여 우대지원
 - 우대지원내용
 - 우선적 보증지원
 - 기술평가항목에 반영되어 양호한 기술사업평가등급 획득에 기여
- 지원신청시 활용방법
 - 기본 제출서류 외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사본 제출

※ 기술혁신선도형기업의 범위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기업)
- 우수기업 인정기업
 - 기술인증 획득기업
 -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포함)
-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 다음 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영위기업
 - 기술집약적인산업 영위기업 외

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및 우대지원

□ 지원내용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기금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우대지원
- 우대지원내용
 - 같은기업당 최고보증한도를 50억원으로 운용(일반보증의 경우 30억원)

□ 지원신청시 활용방법

- 기본 제출서류 외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사본 제출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 아래 각 호 기업 중 기술사업평가등급이 우수(BB등급 이상)한 기업

- ① 벤처기업
- ② 이노비즈기업
- ③ 기술인증획득기업
- ④ 기술관련 수상기업
- ⑤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기술력이 인정되는 기업 (세계 일류 상품 포함)
- ⑥ 다음 산업 영위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 17대 신성장동력산업*, 19대 미래성장동력산업** (*, **: 다음 페이지 참조)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 녹색성장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받은 기업 포함)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 · 재생에너지 관련산업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및 본점
고객센터 1544-1120

*17대 신성장동력산업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
① 신재생에너지	⑦ 방송통신융합	⑬ 글로벌헬스케어
② 탄소저감에너지	⑧ IT융합시스템	⑭ 글로벌교육서비스
③ 고도물처리산업	⑨ 로봇응용	⑮ 녹색금융
④ LED 응용	⑩ 신소재, 나노융합	⑯ 콘텐츠, 소프트웨어
⑤ 그린수송시스템	⑪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⑰ MICE, 관광
⑥ 첨단그린도시	⑫ 고부가식품산업	—

**19대 미래성장동력산업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공공복지 · 에너지산업	기반산업
① 지능형로봇(공)	⑥ 스마트자동차(공)	⑩ 맞춤형 웰니스케어(공)	⑮ 융복합소재(공)
② 착용형 스마트기기(공)	⑦ 심해저 해양플랜트(공)	⑪ 신재생 하이브리드(성)	⑯ 지능형 반도체(성)
③ 실감형콘텐츠(성)	⑧ 5G 이동통신(성)	⑫ 재난안전시스템(성)	⑰ 사물인터넷(성)
④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엔)	⑨ 수직이착륙무인기(엔)	⑬ 직류송배전시스템(엔)	⑱ 빅데이터(성)
⑤ 가상훈련시스템(엔)	—	⑭ 초소형 발전시스템(엔)	⑲ 첨단소재가공시스템(엔)

※(성): 미래성장동력 단독분야
(공): 공동추진분야
(엔): 산업엔진 단독분야



IBK기업은행 우대지원 제도

□ 수출기업육성자금대출

구 분		내 용				
대출대상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되고, 당행 신용등급 BBB이상 기업				
대출한도		<table><tr><td rowspan="3">수출실적별 대출한도 (운전자금)</td><td>1백만불 ~ 3백만불 미만 ⇒ 최대 3억원</td></tr><tr><td>3백만불 ~ 5백만불 미만 ⇒ 최대 7억원</td></tr><tr><td>5백만불이상 ⇒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td></tr></table>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 운용함	수출실적별 대출한도 (운전자금)	1백만불 ~ 3백만불 미만 ⇒ 최대 3억원	3백만불 ~ 5백만불 미만 ⇒ 최대 7억원	5백만불이상 ⇒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수출실적별 대출한도 (운전자금)	1백만불 ~ 3백만불 미만 ⇒ 최대 3억원					
	3백만불 ~ 5백만불 미만 ⇒ 최대 7억원					
	5백만불이상 ⇒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우 대	대출한도	외감 기업(당행 신용등급 BBB+ 이상) 최대 신용 10억 가산				
	대출금리	최대 1.5%p까지 추가 감면(1년간)				

□ 수출채권 (수출환어음) 조기현금화 지원 컨설팅

- 국제팩토링
 - 수입팩터가 수입자와 계약을 통해 일정금액을 신용승락(지급보증)하고, 이를 수출팩터를 통해 수출자에게 통지하면 수출자는 동 신용승락 범위내에서 수출을 실행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무신용장방식 거래지원
- 비소구조건 수출채권매입
 - 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후 무역보험공사가 수입자의 대금 미상환 위험을 담보하는 지원제도
- IBK창조수출채권매입
 -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OPEN ACCOUNT 방식 수출채권매입을 지원

□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중소기업 희망컨설팅 (중견기업 포함)

- 중소기업에 희망을 주기 위해 기업성장단계별로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



□ 환위험 관리 무료 컨설팅

- 당행의 환위험관리 전문가가 직접 방문, 환위험관리 방법을 제시하여 환율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맞춤형 서비스
- 주요내용





- 우대내용
 - 선물환거래 계약보증금 30% 우대
 - 영업점장 추천기업 외환 직거래 우선 지원

□ FTA 컨설팅 (관세청 제공)

- 중소수출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예산으로 FTA 전문 컨설턴트 (관세사)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FTA 활용 종합 컨설팅
 - IBK기업은행 · 관세청 MOU체결로 컨설팅 대상기업 추천을 통한 우선지원

- 컨설팅 사업 안내

사업기간	매년 3월 ~ 11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격	· 상호출자 제한기업이 아닌 중소 · 중견기업 · 직전 2년간 관세청 · 중기청 · 산업부 및 지자체 예산지원 FTA컨설팅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해외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프로그램

- 전자상거래 수출 무료 컨설팅
 - 전자상거래 수출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
 -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FTA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략 등
- 전자상거래 수출 전문 세미나 초청
 - 해외오픈마켓(아마존, 이베이, 티몰, 라자다 등) 진출 전략
 - 중소기업 운영 해외전용 쇼핑몰 운영 전략 등

□ 외국환거래 우대 및 기타 서비스 제공

- 외환수수료 및 수출입 관련 수수료
 - 수출환어음 매입시 : 환가료를 우대 / 수입신용장 개설시 : 발행수수료 우대
-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One-Stop 서비스
 - 신고절차 및 사후관리 상담 서비스 제공,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IBK환율시황 MMS · 이메일 서비스
 - MMS 서비스 : 개장 전 뉴욕시장 주요 이슈 및 일중 시황(일 2회 발송)
 - 이메일 서비스 : 일중, 월간, 연간 외환시장동향(주기별 분석리포트 제공)
-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 잡월드(온라인 취업포털)를 활용해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당행 신용등급 B등급 이상)에 금융비용을 지원

【문의처】

- IBK기업은행 외환사업부 외환마케팅팀 02-729-6139/02-729-7292 (www.ibk.co.kr)



1.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우대지원

1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우대지원

□ 우대지원 내용(“우대부문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

가. “우대부문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

○ 보증한도 우대

- 신용도 취약기업의 경우 기업당 보증한도를 15억원으로 운용하나, 우대부문보증 대상기업은 적용 배제 (최고 30억원)
- 운전자금 보증한도 산출시 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자기자본한도 (자기자본의 300%) 적용을 제외

나. ‘유망 창업기업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

○ 보증료 우대

- 업력에 따라 보증료를 0.2%p~0.4%p 차감

*유망 창업기업: 설립 7년 이내 기술·지식 창업기업, 전문자격 창업기업, 아이디어 창업기업

□ 지원신청시 활용 방법

- 기본 신용보증서류외에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사본 필요

※ 우대부문보증

【개요】

- 수출지원자금,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 및 정부의 시책사업 중에서 특별히 보증을 우대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정하는 기업과 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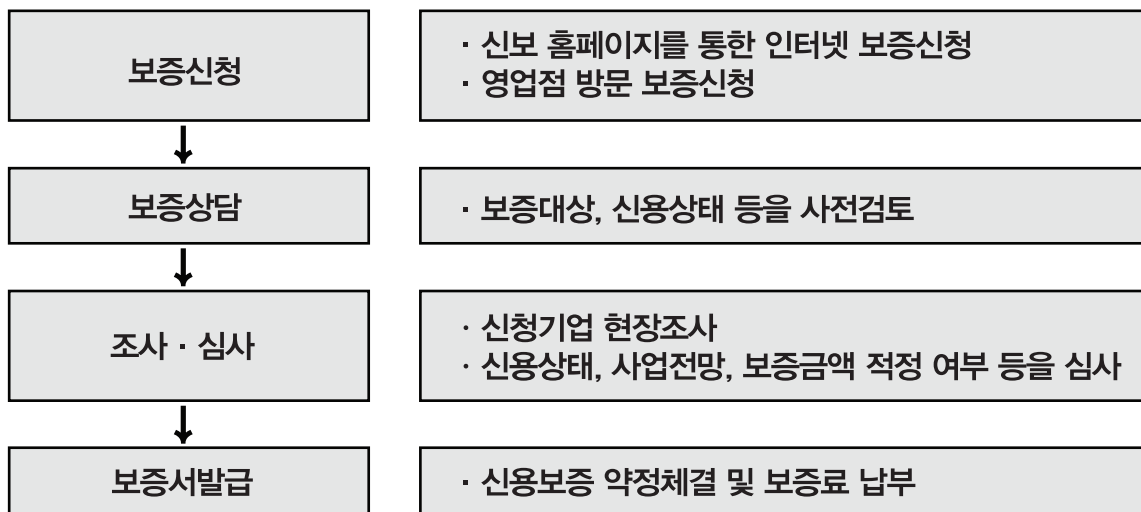
○ 대상자금

- 기술개발관련자금
-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 상업어음할인
- 금융기관 등 대외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협약기관이 보증 추천한 자금

○ 대상기업

- 유망중소기업(타기관 선정업체 포함) 및 신보 선정 Best-Partner
- 고용노동부 선정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수출중소기업(당기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중 수출비중 50%이상)
- 신보 선정 지식기반 대상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협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국세청장 이상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 및 관세청 선정 모범성실 납세기업
- 중소기업청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상시경영자문서비스는 제외)
- 각종 인증마크 획득기업 및 기술·지식관련 수상기업 등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으로 인증받은 기업
-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 우수기업

【지원절차】



【신용보증서류】

- 신용보증에 필요한 서류는 행정기관, 금융기관의 전산망 등과 연계하여 신보 직원이 직접 수집. 다만, 신청기업 및 거래세무사 협조가 필수적임

－ 서류내용

신용보증서류	고객협조사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신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를 사전에 고지
주민등록등 · 초본, 지방세납세증명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국세),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신청 후 발급번호를 신보에 고지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 재무제표	세무회계자료의 전자적 제출에 사전동의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하거나 직원이 현장조사할 때 준비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고객 센터 02-1588-6565(www.kodit.co.kr), 신용보증부 053-430-4342



1.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시책

1

세계일류상품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시책

□ 지원 내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NEGO · 선적후) 보증 한도우대
 - 보증가능한도의 1.5배 범위내에서 보증한도 특별책정
- 단기수출보험 보험한도우대
 - 단기수출보험 보험한도 책정산식에 의한 보험가능한도 초과책정가능
- 보증 · 보험료 할인혜택 부여
 -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은 ‘유망중소 · 중견기업 1군’에 해당되어, 보증 · 보험료 할인혜택 적용

종목	할인내역
단기수출보험	· 유망기업할인을 20% 적용
서비스종합보험 (일시결제방식)	· 유망기업할인을 20% 적용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 선적후)	· 유망기업할인을 20% 적용
수출신용보증(Nego)	· 차감료율 0.1% 적용

□ 지원신청시 활용 방법

- 기본 제출서류 외에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인증서 사본 제출

【개요】

- 기술력 및 시장성을 인정받은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특별지원을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 촉진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제고

【지원대상】

-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을 포함한 유망중소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 및 보험 한도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NEGO · 선적후) 보증가능한도의 1.5배 범위내에서 보증한도 특별책정
 - 단기수출보험 보험한도 책정산식에 의한 보험가능한도 초과책정 가능
- 보증 · 보험료 할인
 - 세계일류상품생산 중소기업 할인 : 정부, 금융기관 또는 수출유관기관에서 지정한 유망중소기업(세계일류상품생산 중소기업 포함)인 경우에 기본요율의 20% 할인

【제출서류】

-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사본 및 수출신용보증청약서, 상사현황표 등 첨부서류

【문의처】

-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고객센터 02-399-6800 / 1588-3884)

※ 지원절차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계별	주요 업무 내용	비고
① 보증상담	· 운용종목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안내 ·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등 우대 대상업체 여부 확인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② 서류제출	· 청약서 및 관련자료 제출 및 확인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③ 방문조사	· 대표자와의 면담, 사업장 방문, 거래은행 담당심사역과의 상담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④ 신용보증 한도책정	· 기업의 신용도, 수출실적, 차입금비율 및 현금흐름 등 재무요소 및 비재무요소 심사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⑤ 보증약정 체결	· 공사가 수출자의 요청으로 은행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와 수출자간의 권리 · 의무 관계를 약정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⑥ 보증서 발급	· 보증료 수납 · 보증서 발급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단계별	주요 업무 내용	비고
① 인수상담	- 수출거래에 대한 개요 (결제조건, 수출금액, 수입자 등) - 지원대상여부 확인 –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등 우대 대상업체 여부 확인 - 이용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② 신용조사	- 수출자 신용조사 – 수출자신용조사의뢰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 수입자 신용조사 – Cyber를 통한 조사 진행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③ 보험청약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청약 – 청약서 – 수출거래실적증명서(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등 제출서류 확인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④ 한도책정	- 인수심사 – 인수결격사유 확인 – 계약진위여부 확인 – 수출입자 신용도, L/C은행 신용도 – 수출입자간 결제실적 – 경합한도 확인 등 인수심사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⑤ 보증약정 체결	공사가 수출자의 요청으로 은행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와 수출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약정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⑥ 보증서 발급	보증서 발급 교부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⑦ 대출통지 및 보증료 납부	수출자는 선적일로부터 10영업일내 대출통지 및 보증료 납부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⑧ 신용 보증부 대출	외국환은행은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에 따라 수출자에게 대출 이행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 수출신용보증(NEGO)

단계별	주요 업무 내용	비고
① 인수상담	- 수출거래에 대한 개요 (결제조건, 수출금액, 수입자 등) - 지원대상여부 확인 –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등 우대 대상업체 여부 확인 - 이용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② 신용조사	- 수출자 신용조사 – 수출자신용조사의뢰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 수입자 신용조사 – Cyber를 통한 조사 진행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③ 보험청약	- 수출신용보증(NEGO) 청약 – 청약서 – 수출거래실적증명서(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 등 제출서류 확인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④ 한도책정	- 인수심사 – 인수결격사유 확인 – 수출입자 신용도, L/C은행 신용도 – 수출입자간 결제실적 – 경합한도 확인 등 인수심사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⑤ 보증약정 체결	공사가 수출자의 요청으로 은행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와 수출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약정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⑥ 보증서 발급	- 보증료 수납 - 보증서 발급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 단기수출보험

단계별	주요 업무 내용	비고
① 인수상담	- 수출거래에 대한 내용 상담 - 지원대상여부 확인 －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등 우대 대상업체 여부 확인 - 이용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② 신용조사	- 수출자 신용조사 － 수출자신용조사의뢰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 수입자 신용조사 - Cyber를 통한 조사 진행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신용정보사업본부
③ 보험청약	- 보험청약 － 청약서 － 수출거래실적증명서(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등 제출서류 확인 * Cyber 청약 가능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④ 한도책정	- 인수심사 － 인수결격사유 확인 － 수출입자 신용도, L/C은행 신용도 － 수출입자간 결제실적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⑤ 보험증권 발급	- 보험증권 발급 교부 * Cyber 출력 가능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⑥ 수출통지 및 보험 관계 성립	- 개별보험 － 선적 - 포괄보험 － 당월 선적분 익월 20일까지 수출통지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⑦ 보험료 발행 및 보험료 수납	- 수출자 앞 지로 및 보험료내역 발송 - 보험료 수납 － 개별보험 : 당월선적분 익월 25일까지 납부 － 포괄보험 : 당월선적분 익월 10일까지 납부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 포괄보험 특약체결	- 포괄보험 가입신청서, 수출실적증명서 등 제출 - 포괄보험 가입요건 부합여부 확인후 특약체결	중앙지사 또는 국내지사

1.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일류상품기업 우대

1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일류상품기업 우대(신청자격 조건)

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선정시 세계일류상품관련 기술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개발하는 경우 신규평가지 취득한 산술평균 점수에 3점을 가점 부여
 - 가점부여 내용
 - 평가위원회 최종 종합평점의 3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점
 - 산업기술개발사업자 선정 시 혜택
 -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내외 자금지원 (5년 이내)
- 사업공고시 신청자격 조건
 - 주관기관 신청자격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 점유율이 10위 이내인 기업이거나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검토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10위 이내 달성 가능성이 있는 기업

나. 지원신청시 활용 방법

- 기본 제출서류외에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인증서 사본 제출

※ 우수기술개발사업

【개요】

-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지원대상분야】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세계일류 기술 및 품목

【신청자격】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 중소기업 · 중견기업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을 기준으로 함)

〈 해당업종 〉

-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 53호)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 제조업 중 제외업종 :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10), 음료 제조업(중분류 11), 담배 제조업(중분류 12)
 - 제조업 이외의 업종 중 포함 업종[지식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 ·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여부 검토

③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매출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매출액 대비 수출액 (제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 이상	매출액의 10% 이상 수출
4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4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400억원 미만까지는 3% 적용, 400억원 초과분은 2%를 적용 하여 합산한 금액 이상	

* R&D투자비율 산정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에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 등만 인정하며 별도의 확인서 등은 불인정함, 수출실적은 수출신고필증발급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함

** 지식서비스업 분야 및 제약기업(표준산업분류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중분류 20) 및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분류 21) 중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조건 없음

주1) 매출규모별로 400억원 미만일 경우 최저 연구개발비를 3%를 적용하고, 400억원 이상일 경우 4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 적용 후 합산함
(예 : 매출액이 700억원인 기업의 경우 400억원에 대하여 3%(12억원) 적용, 나머지 300억원에 대하여 2%(6억원) 적용 후 합산하여 연구개발비가 총 18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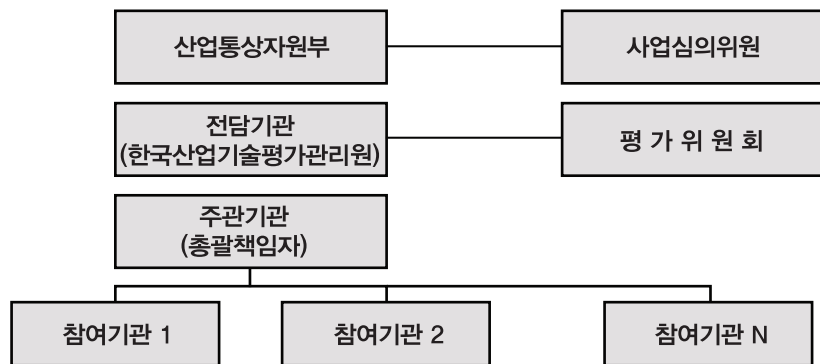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임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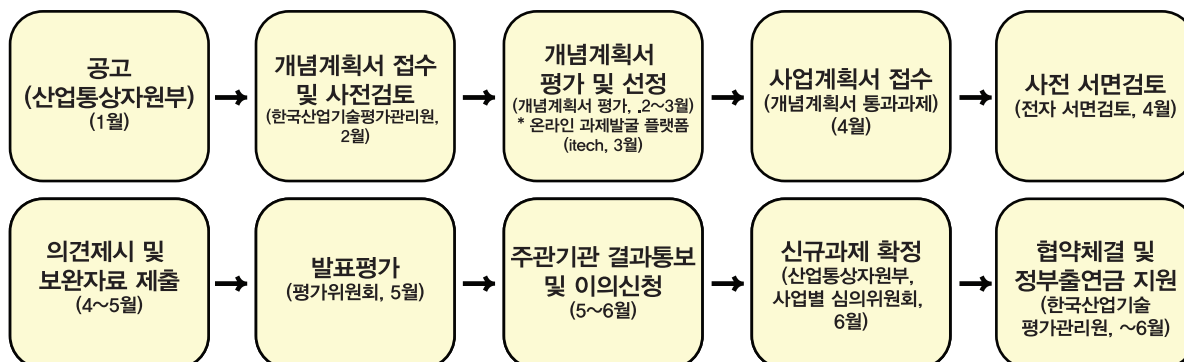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추진체계 및 절차】



기 관	기 능
전담기관	1) 사전검토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운영
	2) 기술수요조사사업 및 조사결과의 종합 분석
	3)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및 협약체결 등
주관기관	1) 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4) 정부출연금외 현금/현물 부담
	5) 성과활용 및 보고, 기술료 납부 등
참여기관	1) 기술개발 협력

【추진일정】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53-718-8214(www.keit.re.kr)



1.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시 우대

1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시 일류상품기업 우대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기업 선정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한 1점 가점 부여
 - 선정평가 가점항목 중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항목 1점 부여

□ 사업공고시 신청자격 요건

- 수출액 20억원 이상,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감법인에 한하며 공정거래 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단,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표준산업분류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표준산업분류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표준산업분류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표준산업분류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 표준산업분류 63 (정보서비스업)
 - 표준산업분류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단, 중소기업청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선정기업은 상기사항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지원신청시 활용방법

- 기본 제출서류 외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사본 제출

※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

【개요】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수출기업을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신청자격】

- 수출액 20억원 이상,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감법인에 한하며 공정거래 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단,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표준산업분류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표준산업분류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표준산업분류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표준산업분류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 표준산업분류 63 (정보서비스업)
 - 표준산업분류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단, 중소기업청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선정기업은 상기사항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사업에 대한 CEO의 참여의지가 높고, 신성장동력 산업에 속하거나 상생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당행의 전략과제에 부합하며,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이 높은 중견기업 위주로 선정

【선정평가표】

- 한국형 히든챔피언 적합도(80%)와 재무안정성(20%)으로 구성

구 분		평가항목
한국형 히든챔피언 적합도 (80%)	기술력(35%)	기술개발투자현황, 기술개발추진능력, 기술혁신성 (3항목)
	성장잠재력(35%)	시장성장잠재력, 기업성장잠재력, 중장기사업계획 (3항목)
	CEO역량(10%)	경영역량, 기술역량 (2항목)
재무안정성 (20%)	재무건전성	수출입은행 신용평가시스템 재무등급 (1항목)

【지원내용】

- 한국수출입은행의 최우대 금융·비금융 서비스 제공(해외시장개척자금, 수출거래 이행보증, 해외투자자금 지원 등)
- 기업의 글로벌화 활동 전반에 걸친 금융·비금융서비스 One-stop 제공
-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지원 (전문컨설턴트의 코칭서비스 및 표준모델 제공)
-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선정서 및 선정패)으로 대외인지도 향상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 히든챔피언사업팀 02-3779-6298(www.koreaexim.go.kr)



1. IP-R&D 전략지원 사업 수혜기업 선정 시 우대

1

IP-R&D 전략지원 사업 수혜기업 선정시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참여기업 우대

□ 지원내용

- (①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3점 가점 부여
현재일류상품, 차세대일류상품,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 (②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1점 가점 부여
선정평가 가점항목 중 “타 부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항목 1점 가점 부여

□ 지원신청 시 활용방법

- 필수 제출 서류 외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참여기업 확인서류 온라인 제출

(1)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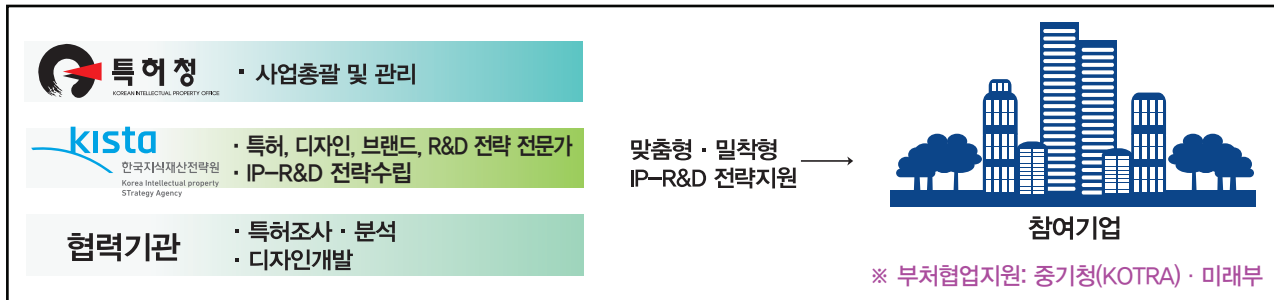
【개요】

- 우리 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고객 관점의 IP 종합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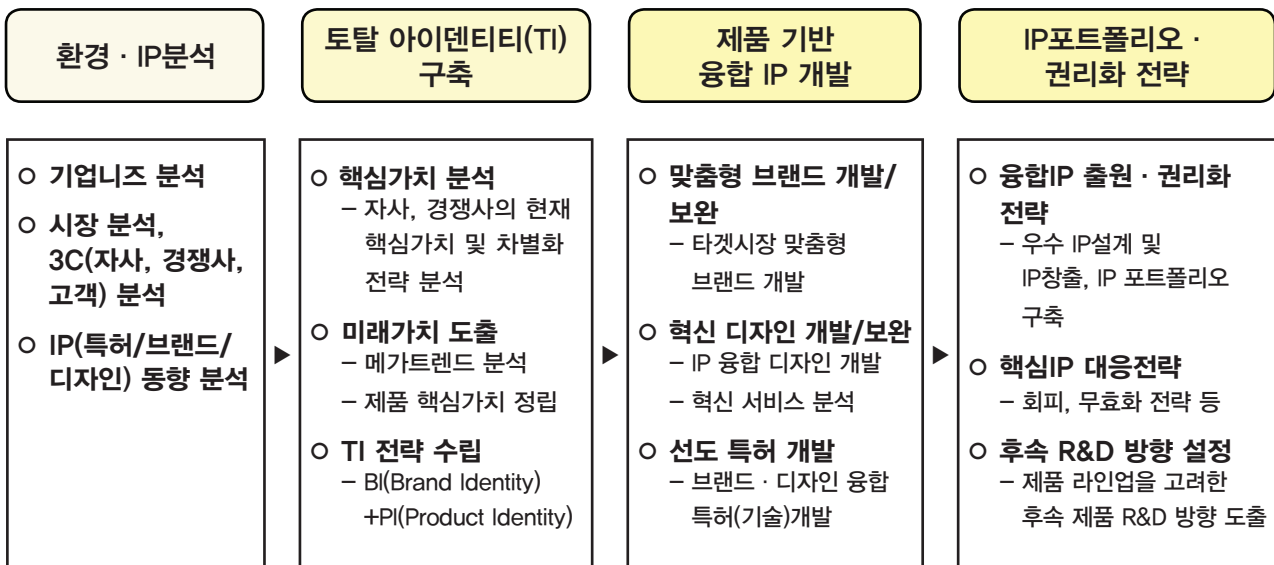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방식:**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1)와 지재권분석전문기관2)이 팀을 구성하여 IP(특허·디자인·브랜드)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밀착형 R&D 전략 수립 지원
 - 1)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전문위원으로 R&D와 IP경력 12년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
 - 2) 특허·디자인·상표 조사 분석 전문기관, 디자인·브랜드 개발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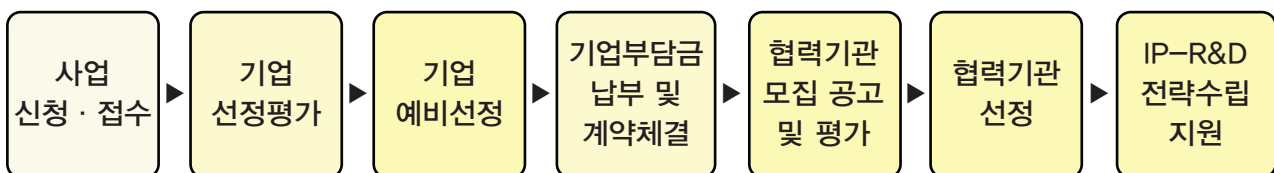


○ 전략 수립 절차



※ 전략수립절차는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추진 절차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접수】

- 접수시기: 상반기(전년도 12월~1월), 하반기(4월~5월)
- 접수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 온라인 신청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이메일
시행 부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184	시행계획 등	—
관리 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장전략팀)	02-3475-8596, 8597	사업관리시스템 기관 등록, 회원 가입 등	iprndinfo@kista.re.kr
		02-3475-1302, 8590	사업 신청 · 접수, 선정 평가, 유의사항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특허청 : www.kipo.go.kr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www.kista.re.kr
- IP-R&D 사업관리시스템 : ippro.kista.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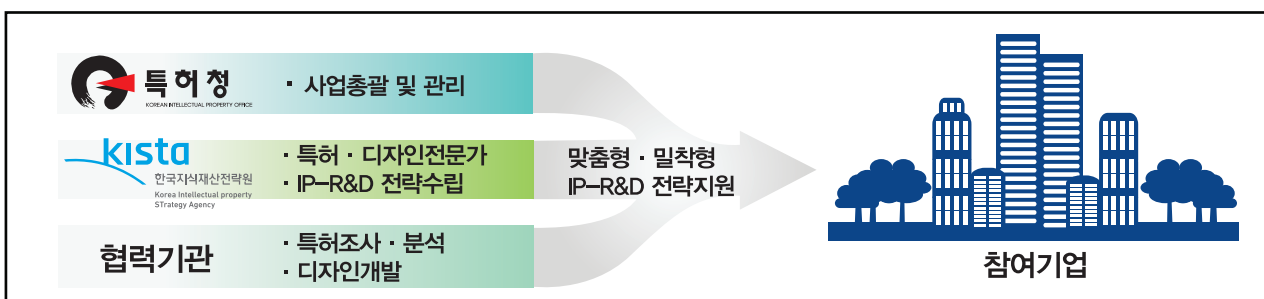
(2)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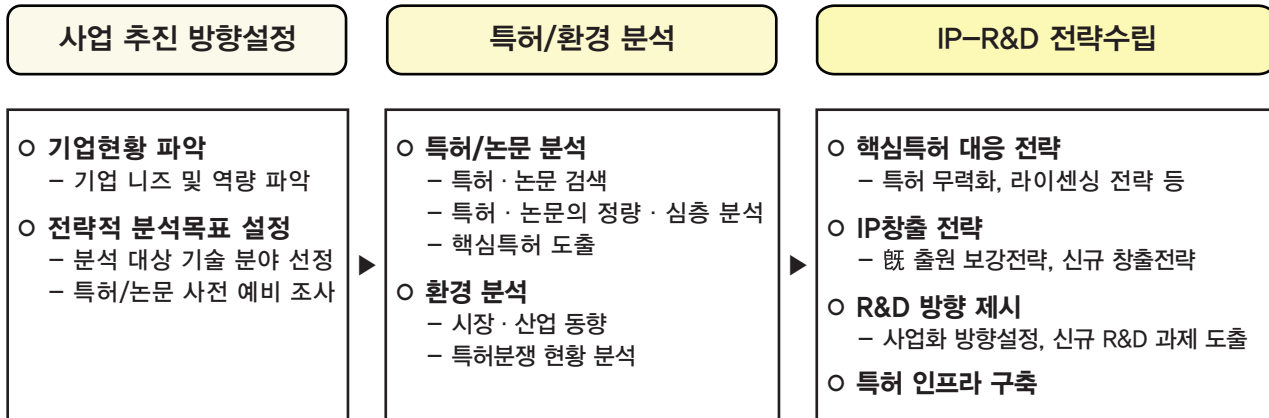
- 우리 기업이 핵심 · 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지원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지원내용】

- 지원방식: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와 지재권분석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 맞춤형 · 밀착형 R&D 전략 수립 지원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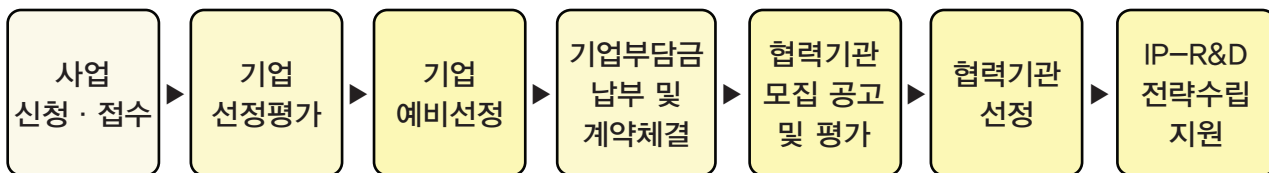


○ 전략 수립 절차



※ 전략수립절차는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추진 절차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재창업 중소기업 : 7년 이내 재창업한 기업(2011년 1월 1일 이후 재창업)으로 상세 내용은 사업 공고문 참조

【신청 접수】

- 접수시기: 상반기(전년도 12월~1월), 하반기(4월~5월)
- 접수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 온라인 신청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이메일
시행 부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184	시행계획 등	-
관리 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중소기업팀)	02-3287-4399, 4254	사업관리시스템 기관 등록, 회원 가입 등	ippro@kista.re.kr
		02-3287-4253, 4362	사업 신청·접수, 선정 평가, 유의사항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특허청 : www.kipo.go.kr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www.kista.re.kr
- IP-R&D 사업관리시스템 : ippro.kista.re.kr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